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을 육상의 고정된 지점에 개설한 지구국으로 한정하던 것을 육상의 이동체·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한 지구국도 포함하도록 하여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선박·항공기 내 등에서도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048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1조제2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29조제1항)

- 1) 이동체(선박·항공 등)에서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의 무선국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동형지구국(3종) 정의 신설
- 2) 사업자가 대표로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단말을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나. 전파법 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안 별표1, 별표28)

- 1)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2)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舊 부동산공시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공시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부터 주파수 및 복사전력 등 송신 제어를 받는 지구국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제42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9.육상이동형지구국 : 육상(하천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 이동체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 40.해상이동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 41.항공이동형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제7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2제4항”을 “법 제58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비고란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나목6)부터 19)까지를 각각 7)부터 2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6) 법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법 제89조의3제2호의2	200	300	500
가. 판매·제조·수입업자		200	300	500
나. 가목 외의 자		경고	30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 증 및 적합등 록, 자기적합 확인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면 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 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대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카. 그 밖에 전과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 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 증 및 적합등 록, 자기적합 확인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 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 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적합성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

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 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증 및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나.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 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 정 인 증 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 ----- ----- -----.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함)로 부터 주파수 및 복사 전력 등 송신 제어를 받는 지구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무선기기

5. (생략)

②·③ (생략)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38.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39. ~ 43. (생략)

② (생략)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

-----.

1. ~ 38. (현행과 같음)

39.육상이동형지구국 : 육상(하천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 이동체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40.해상이동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41.항공이동형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과 통신하는 지구국

42. ~ 46. (현행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58조의2제5항-----

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 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 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 3. (생략)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과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4924